

# 2018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

2018. 1



## 목 차

- I. 정책자금 일반 ..... 1
  - 1. 개요 ..... 2
  - 2. 공통서류 ..... 4
  - 3. 지원대상 ..... 7
  - 4. 지원내용 ..... 12
  - 5. 문의처 ..... 14
- II. 정책자금 상세내역 ..... 17
  - 1. 일반경영안정자금 ..... 18
    - 1-1.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 18
    - 1-2.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 20
    - 1-3. 여성가장 지원 ..... 23
    - 1-4. 협업화 지원 ..... 25
    - 1-5. 창업자금 (창업초기 소상공인) ..... 26
    - 1-6.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 소상공인) ..... 28
    - 1-7.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 29
    - 1-8. 경영애로자금 (경영애로 소상공인) ..... 30
    - 1-9. 전환대출(희망리턴패키지) ..... 32
  - 2. 성장촉진자금 ..... 40
  - 3. 청년고용특별자금(舊청년드림자금) ..... 41
-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 43
- 붙임2. 업종 구분 방법 ..... 51
- 붙임3.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53
- 붙임4. 중소기업부 인정교육 범위 ..... 55
- 붙임5.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양식 ..... 61
- 붙임6.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예시 및 요령 ..... 68
- 붙임7. 소상공인 전환대출 추가 신청양식 ..... 79
- 붙임8. 소상공인 전환대출 관련 참고자료 ..... 91
- 붙임9. 조기상환제도 ..... 97

## I. 정책자금 일반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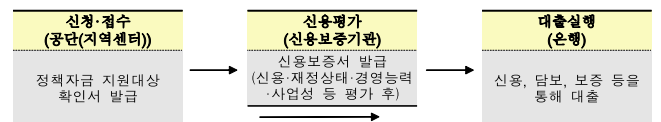
#### 【 목 적 】

- 본 지침은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 제4조 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 (現 중소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지침 해석의 명확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추진하고자 함
  - \* 해당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대리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고시, 중소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규정, 소상공인 용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에 따름
- 본 지침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금융지원실의 해석에 따름

#### □ 정책자금 운용목적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용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

#### □ 지원절차



#### ○ 신청·접수

- 전국 59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 \* 해당연도 예산 소진시 대출불가(이연도 용자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90일(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채권확보 :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 (신용보증서)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 발급
-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
- 대출실행(19개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KEB하나,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저축은행 중앙회,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탁중앙회

- (자금신청시점\_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회보험 납부확인서(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 이외에도 월별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인정 가능(금융지원실 문의)
- \* "소상공인 업력별 상시근로자수 확인기간"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확인

**<참고> 소상공인 업력별 상시근로자수 확인기간**

업력	확인기간(고지 기준)	산정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 ~ 12월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③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 월 ~ 용자신청 월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 \* 업력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준용
-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에 이중 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④ 매출액 확인서류(‘16년도 이후 창업기업만 해당)**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용자 신청서류(사업계획서)로 대체
-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 (예)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 2. 공통서류

□ 구비서류

① 실명확인증표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자금신청서 용자신청 담당자가 신청자의 본인 확인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이내)

-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사업자등록상태 조회결과를 출력하여 작성서류와 함께 보관)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이내)

- (자금신청시점\_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 대표자가 용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 \* 대표자가 용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 확인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대체 서류(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1.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 : 아래의 ①, ② 서류 모두 제출
  - ① 국가유공자카드(증서) 또는 유족카드
  - 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단,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가능한 서류를 제출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 현황신고서 중 택1
- \* 상기 연매출액 증명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무계산서, 납품 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 가능
-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은 "[붙임2] 업종구분 방법" 참조

□ 작성서류

서류명	비고	양식
① 소상공인정책자금 용자 신청서	-	붙임5
② 사업계획서	-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용자신청 자격판단 및 유의사항	신청기업에 사본 교부	
④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담보종류로 신용보증서를 선택한 신청기업에 한함	
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사회보험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월별가입자내역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ps.or.kr)
	월별(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청업체(세무사사무소) 보관 신고서 사본(세무사사무소 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의료급여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가유공자카드(증서), 유족카드	국가보훈처
	표준재무제표증명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신고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거래실적 확인	매입매출처별 세무계산서합계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세무대리인(직인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3. 지원대상

#### < 소상공인 확인기준[붙임1] >

① 연평균매출액 + ②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 사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sup>1)</sup>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의 별첨1]

- (2015년 이전 창업기업)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평균매출액과 무관하게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준 소기업에 관한 특례)

- (2016년 이후 창업기업)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7~2018)은 사업계획서(월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 2016년도 창업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으로 연매출액 확인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업자등록일	구분	확인서류	비고
2015년 이전 사업자 등록		-	미확인
		-	미확인
	간이과세자	-	미확인
2016년 이후 사업자 등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손익계산서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월매출액)로 대체 *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매출액 × 12개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분	내용
산정 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 서류	(자금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수)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자금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수) 有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 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6.1.19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수)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수)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받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 및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6.11.20	'18.4.10	(직전 사업연도) '17.1월 ~ '17.12월
예시2	'17.2.5		(최근 12개월) '17.4월 ~ '18.3월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 사람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한 사업자 (사업개시일 이후 용자신청가능)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의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붙임2」 업종구분 방법, 「붙임3」 정책자금 지원제외의 업종 참조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 영리사업자 확인 방법 >

구분	사업 코드	내용	비고
고유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사업자등록증 (①②③ ④⑤ ⑥⑦⑧⑨⑩)	01~79	개인과세사업자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89이외의 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신청 불가
90~99		개인면세사업자	-
81,85, 86,87		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탁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신청 불가
83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신청 불가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 【 영리 기준 】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특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재(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비영리 기준 】**

-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정보센터, 영유아놀라자 등
- ② 비영리 법인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있더라도 이익 분배가 불가능
  - 상법에서 '비영리 및 단체'로 구분된 정부·지자체·학교법인·의료법인·협회 등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므로 소상공인이 아님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에 열거된 법인 등은 그 주주·회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 ▷ 사업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봄
    - ▷ 농업협동조합 : 민법 제22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으로 봄
    -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비영리법인을 규정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 ③ 단체 등 기타
  - 교회 등 종교단체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4.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용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 장애인기업, 사업전환자금, 성장촉진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舊청년드림자금) 1억원 이내
- **기용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 정책자금 용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 대환대출 인정시 정책자금이 운전자금이 아닌 대환자금으로만 운용될 우려가 있어 산업연관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허용하지 않음
  - \* 단, 예외적으로 소상공인 전환대출 및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 (예)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시, 최대 n x 70백만원까지 가능
  -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용자잔액 기준으로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 (예) '15년 3천만원 대출 후 '16년 4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일시회수 유보 】**

- ①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 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 ②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사업자등록증)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고유번호증)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
  - 단, 정상상환 중에 한하며, 개인사유로 인한 변경시 불인정
    - ▷ (예) 국세청이 요양관련 사업을 '13년 이후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비영리(고유번호증)로 변경

□ 기타

-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
- 자금회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중구 경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엑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동로275, 비전빌딩2층(군자동)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2 (02)839-87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키움스벤처센터 208호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서초동 훈민터4 4층)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금강로 81, 신한은행강원본부 2층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2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만덕대로27번길 3, 대흥빌딩 8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이미티 6층 (연산동)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돌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신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 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원군, 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충의로 28, 경남은행 영업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사천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함안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 통영지점 2층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제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 통산동지점3층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육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남부동)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봉곡군, 예천군, 영호군, 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령동 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아름치점) 3층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5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2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 198-3),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부평·영등포·여주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자로 268, 21층	서구, 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 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내(남악리)	목포시, 나주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화순군, 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 3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당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경기·인천·부산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수원시, 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56-5302 (031)663-5302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421) 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 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 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오리로 904, 영우프라자빌딩 7층 703호	광명시, 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88-7341 (031)788-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지털인센터 407호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 1층	부천시, 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 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지점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연수구, 남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404, 그랑프리빌딩 9층 부평웨딩홀 채원부페(부평동)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대전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장동)	유성구, 서구, 대덕구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충청·경북·충남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하나은행 대충동지점 3층)	중구, 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취암동)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2호 서산시(동문동)	서산시, 보령시, 태안시, 당진군, 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봉황로 124, LGU+ 공주점 사 1층 (교동)	공주시, 청양군, 세종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 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 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재단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원재단	(033) 260-0001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www.kgsb.co.kr
경남재단	(055) 212-1250	www.gns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063) 230-3333	www.jbcredit.co.kr
제주재단	(064) 758-5740	www.jejuinbo.co.kr
충남재단	(041) 530-380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중앙회	(042) 480-4201	www.koreg.or.kr

## II. 정책자금 상세내역

### 1. 일반경영안정자금

#### 1-1 일반자금 (일반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

\* 단,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

####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

※ ①~⑥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 기존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업태 확인
- 개인기업 주요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양도) **합수** 포함) 되어 있을 것  
→ 포괄양수도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명세서 등 포함) 확인
- 개인기업의 자산 **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 되어 있을 것.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  
→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로 확인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주주명부로 확인
- 개인기업을 폐업 시킬 것  
→ 국세청 휴폐업조회 확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용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자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④ <b>(‘16년 이후 창업기업)</b>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 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용자 신청서류(사업계획서)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b>(필요시)</b>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① “개인기업에→법인기업”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 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4~16 참조)

**1-2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중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 (예외사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마원 규모(300m<sup>2</sup> 이하)의 안마 시설소는 지원가능
  - \* 업체가 ‘지압원’일 경우 보건업(지원제외 업종)이므로 지원불가
  - 안마시설소 개설신고증명서(발급처 : 시군구 보건소)
  - 임대차계약서(임대건물의 경우) 혹은 등기부등본(자가건물의 경우)

**【 안마시설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

-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설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보건복지부령 제60호, 2011. 6. 8 개정]
- ① 안마시설소 : 연면적(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830제곱미터 이하
  - ㉠ 안마실의 외부에 욕실과 발한실(發汗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90제곱미터(욕실과 발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 이하
  - ㉡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마실의 내부에 욕조가 없는 샤워시설을 설치가능
- ② 안마원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로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불가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부속 기관으로 안마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가능
  - ㉡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종업원의 수는 4명 이하

○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상자인 “장애인” 범위 정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138, 2011.3.7) “국가유공자등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적용대상 】**

- \*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시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7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자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소명 필요없음 ⑤ <b>(‘16년 이후 창업기업)</b>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 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용자 신청서류(사업계획서)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⑥ <b>(필요시)</b>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①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중서)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4~16 참조)

### 1-3 여성가장 지원

#### □ 지원대상

○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

- 가족관계증명서 등재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중 주민등록등본 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가족이 경제활동 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 】**

1.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만 인정(실직은 불인정)
2. 직계존속 : 주민등록등본 상 만65세 이상일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단, 만65세 미만일 경우에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인정)
3. 직계비속 : 주민등록등본 상 만18세 미만일 경우,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단, 만18세 이상일 경우에도 질병이나 장애, 군복무, 학업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인정)

####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신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 <b>'16년 이후 창업기업</b> )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류(사업계획서)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 <b>필요시</b> )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으로 등재된지 <b>6개월 이상된 세대원의 경제활동 불가능을 증빙하는 서류</b> (최근3개월이내) - 배우자 및 형제, 자매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존속 : 만 65세 미만일 경우 증명서류 필요 * 만 65세 이상일 경우 증명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일 경우 증명서류 필요 * 만 18세 미만일 경우 증명서류 불필요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혹은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군복무확인서, 재학(휴학)증명서 등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4~16 참조)

### 1-4 협업화 지원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지원협약을 체결한 협동조합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지원협약을 체결한 협동조합 구성원인 개별 소상공인  
 \* 소공인으로 구성된 협업체 소속 개별 기업은 소공인특화자금으로 연계

####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기타사항 : 보증수수료(신용보증기금) 0.5% ~ 0.2% 감면  
 \* 제조업, 도소매업, 유통서비스업, 콘텐츠산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 및 구성 소상공인  
 \* 관련문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무방문, 서류 팩스로 징구)

####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신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 <b>'16년 이후 창업기업</b> )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류(사업계획서)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 <b>필요시</b> )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 문의처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 공단본부·협업지원실(042-363-7711~13, 7721~24)
- 정책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4~16 참조)

### 1-5 창업자금 (창업초기 소상공인)

□ 지원대상 : ①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②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이수한 소상공인

<교육 인정 기준>

구분	시수	비고
① 공단 이러닝 교육 (edu.seda.or.kr)	12시간 이상	* 창업공통·경영공통·실전창업·실전경영·협동조합 등 전 교육과정
② 소상공인 사관학교	150시간 내외	* 소상공인 사관학교 이론교육 수료생
③ 신사업 사업화 교육	80시간 이내	* 신사업 사업화 교육 졸업생
④ 소상공인 경영교육	12시간 이상	-
①~④ 교육 이외의 오프라인 교육	12시간 이상	* [붙임4] 중소벤처기업부 인정교육 범위 참조 * 관련교육 수료증 지참 및 확인 필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또는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또는 피해사실확인서)을 발급받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은 교육 이수 없이 신청 가능

□ 인정기간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b>(‘16년 이후 창업기업)</b>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류(사업계획서)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b>(필요시)</b>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재해 소상공인)	① 교육 수료조건 예외 적용시 :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지자체 발급) *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은 재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불필요

□ 문의처

- 교 육 : 공단본부-교육지원실(042-363-7811, 7821, 7841)
- 정책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4~16 참조)

**1-6**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 재창업패키지 교육 인정기간 : 재창업패키지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 \* 「융자관리시스템 → 정책자금 신청 →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에서 재창업 패키지 수료여부 확인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b>(‘16년 이후 창업기업)</b>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류(사업계획서)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b>(필요시)</b>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문의처

- 재창업패키지 : 공단본부-교육지원실(042-363-7827)
- 정책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4~16 참조)

**1-7**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융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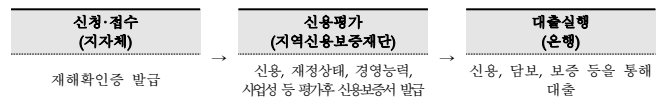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0조(지원방식 및 한도) ④재해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기업업무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 '17년 포함 지진피해 소상공인은 연 1.5%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 '17년 포함 지진피해 소상공인은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적용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재해확인증(지자체)

□ 진행절차

- 융자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확인증 발급 후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1-8 경영애로자금 (경영애로 소상공인)

□ 지원대상 :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어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하 중소기업청)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용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관련근거 : 재해·재난으로 인한 간접피해 소상공인 지원지침 제7조(지원방식 및 한도) ④재해·재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기업청장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자일자별 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b>(‘16년 이후 창업기업)</b>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 재무제표 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용자 신청서류(사업계획서)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b>(필요시)</b>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 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4~16 참조)

## 1-9 전환대출(희망리턴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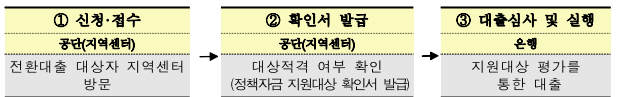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자(1개월 이상 근로)
- \* 희망리턴패키지를 수료했다라도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지원 불가
- \* 신용등급 제한 없음
- \* 희망리턴패키지 유효기간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용자조건

- 대출한도 : 1인당 최고 7천만원
- 전환대상 채무 원금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 단, **십만원 단위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므로 만원 단위 이하의 원금 잔액\*은 대출한도에서 제외
- \* 신청인 부담금액에 포함되므로 은행방문시 별도 현금 상환 필요  
(예) 전환대상 채무 합계 13,635,000원 - 《신청인부담》만원단위 이하 35,000원 = 희망대출 금액 “13,600,000원”
- 대상채무 : 폐업 전 및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전에 발생한 2금융권 채무
- 대출금리 : 연 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대출원금의 70%는 **“매월”**마다 원금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마지막 회차에 일시상환
- 용자방식 : “제3자 예금담보”방식(용자관리 시스템 자동 선택됨)  
\* 신청인의 담보는 불필요하며 제3자인 공단 예금담보를 통해 대출 실행

□ 진행절차



□ 유의사항

<p><b>※ 채무 관련 유의사항</b></p> <p>▪ <b>[대출한도 부족시]</b> ①,②,③의 방법 참조</p> <p>① <b>(다수채무 보유시)</b> 대출한도내에서 대상자가 선택하는 제2금융권 채무에 대한 전환대출 신청가능(1개 채무에 대한 <b>“일부상환”</b>은 불가하며, 전환대상 채무에 대한 “전액상환”을 통해 소상공인 전환대출 상품으로 전환)</p> <p>* 예) 제2금융권 보유채무 총액 8천만원(A채무:신용대출 5천만원 + B채무:신용대출 1천만원 + C채무:담보대출 2천만원)으로 업체당 대출한도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가 두 개의 채무(A,C)를 선택한 경우 해당 채무에 대한 전환대출 신청가능</p> <p>② <b>(전환대출 실행시점, 부족분 납부)</b> 전환대출 확인서 발급후 취급은행 방문시, 신청자가 별도의 현금으로 한도 부족분을 취급은행에 납부할 경우 신청가능</p> <p>③ <b>(자금신청전, 부족분 납부)</b> 제2금융권 취급기관에 부족분을 상환하고 확인서 발급을 위해 재방문하는 경우 신청가능</p> <p>▪ <b>[대출불가 금액=본인 부담 금액]</b> 미상환 원금 잔액 중 한도 부족분, 만원단위 이하 원금잔액*, 미상환 이자잔액, 연체이자잔액,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신청자 본인이 은행에 전환대출 신청시 상환하여 <b>전환대상 채무를 전액 상환가능한 경우 대출 실행 가능</b></p> <p>* 특히, 십만원 단위로 대출 신청 가능하므로 만원 단위 이하의 원금잔액이 있을 경우, 만원 단위이하에 대한 자부담 발생을 사전에 안내해야함</p> <p>** 고금리 내역 및 송금요청서 “현금추가 송금액”에 대출불가 금액 함께 기재</p> <p><b>※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b></p> <p>▪ <b>(확인서 의미)</b>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 대상 및 대출 한도를 확인하는 서류로 대출가능을 확정하는 서류는 아님</p> <p>▪ <b>(확인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b></p> <p>▪ <b>확인서 발급 횟수</b></p> <p>- 채무자가 부담하는 대상채무 수와 관계없이 <b>전환 대상채무 총액에 대하여 1건</b>으로 확인서 발급, <b>전환대출은 1인당 대출횟수는 (연도구분 없이)1회로 제한</b></p> <p>* 예) A채무 2천만원 + B채무 1천만원 = 3천만원 한도의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p> <p>- <b>대출한도 여유에도 불구하고 1회 전환대출 지원 후, 추가 전환대출 불가</b></p> <p>▪ <b>확인서 발급 시</b> 용자관리시스템 자금구분 선택 : 경영안정자금(희망리턴패키지)</p>
--

□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④ (전환대상 채무) 금융거래확인서(최근1개월 이내) * 발급 방법 :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발급 절차 : 1. 직접내방 또는 2. 전화통화 → 본인확인 → Fax송부) *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대체 서류 - 대출확인서 등 : 금리, 대출일, 대출금액 등 확인가능 서류 - 잔액증명서 등 : 현재 원금잔액 확인가능 서류 - 거래내역서,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 3개월내 연체 사실 확인가능 서류 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자택)(최근 1개월 이내)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관할 법원등기소, 각 구청 민원실 비치 부동산등기부발급용 기계를 활용하여 본인이 발급 지침 * 자택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추가	⑥ 근로계약서 * 발급처 :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사업장 발급 ⑦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최근 1개월 이내) * 발급처 :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고용보험 www.et.go.kr) ⑧ 급여명세서(최근 1개월 이내) * 발급처 :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사업장 발급 ⑨ 폐업사실증명원 * 발급처 : 관할 세무서 발급

□ 작성서류

구분	준비서류
공통	① 정책자금 용자신청서 * (유의) 폐업 전 업체 현황 기재 ④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 ⑤ 소상공인 전환대출 자가 체크리스트 ⑥ 고금리 채무내역 및 송금요청서 *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여, 원본은 대출취급은행에 비치하여 방문하고, 지역센터에서는 사본 보관
추가	⑦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하여, 센터담당자가 기재

※ 소상공인 전환대출 준비 및 작성서류 일체는 스펬하여 용자관리시스템에 파일로 첨부하고 제출본은 별도철로 보관 요망

□ 지원대상 확인방법

구분	확인 사항	확인 방법
정책자금 기본요건	① 폐업 여부 <b>&lt;유의사항&gt;</b> → 폐업사실증명원 폐업 확인 - 폐업자에 대한 "상당지도시스템" 고객 등록방법 · 사용자 구분 : "예비창업자" · 합계 정보 : 폐업전 합계 정보 등록 · 사업장 전화번호 "000-000-0000"으로 기재 → 용자관리 시스템 연접시 "정책자금신청목적"에서 "전환대출" 선택	① 폐업사실증명원 확인 <b>▶ 기준종일</b>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대리대출)」 기준 준용
전환대출 기본요건	③ 제2금융권 이용자 : 제도권 금융기관 중,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 <b>&lt;해당업권&gt;</b> 보장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카드사(카드권),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카드권), 상호금융(단위수입 단위농협, 산협, 산원조합, 새마을 금고, 저축은행, 우체국, 투자신탁회사, 중립금융회사 등 채무 ·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예: 기업은행, 농림은행, SC제일은행 등) 카드론 대출의 경우, 은행업권에 해당하나 채무의 성격이 제2금융권 채무와 동일하므로 취급가능 <b>&lt;제외업권&gt;</b> -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파이낸스사 등 신규 금융기관) (예) 아르파(비탈대부(비탈캐시), 신의대부(신의머니), 빌립크레디트대부(빌립캐시), 바로크레디트대부(바로크), 리드코프, 미조사당 등 불가) <b>&lt;제외채무&gt;</b> - 할부금융, 보증서 대출, 가계담보대출, 보험사 알과대출, 신용카드사용액(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 전환대상 채무 금리가 10% 미만인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확인 <b>&lt;확인절차&gt;</b> (1) 금융거래확인서의 "금융기관명" 확인 (2) "금융위화>지식마당>제도권금융기관" 조차 제2금융권(관 중 은행이 아닌 금융)인지를 확인 (유의) 영문의 한글표기 및 "주"에 따라 검색 결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3) 확인가능한 경우, "제2금융권"이용자 <b>· (참고1) 제2금융권 판별 방법</b> 참조
	④ 상환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 중, 성실상환' 채무 · 성실상환: 최근3개월 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 또는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이 아닌 채무	▶ 금융거래확인서 확인 <b>&lt;확인내용&gt;</b> (1) "당초차입일": 본건 대출신청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하는지 확인 (2)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명세": 기록이 없을 것 (3) "기준일 현재 연체여부": "없음"일 것 <b>▶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b> 금리, 대출받은 날짜, 대출금액, 현재 원금잔액, 3개월내 연체사실 확인가능 서류로 대체접수 - 금리, 대출일, 대출금액 등 확인가능 서류 : 대출확인서 등 - 현재 원금잔액 확인가능 서류 : 잔액증명서 등 - 3개월내 연체 사실 확인가능 서류 : 거래내역서,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 (제외요건) 제외대상 확인

구분	확인 사항	확인 방법
[공단확인] 제외 대상	⑤ 재산의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자(1년 이내) · 「참고2 등(사업장부중명세서 확인방법)(가) 참조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사업장 및 자택 등기사항전부중명세서(토지, 건물) 확인 · 등기사항전부중명세서의 "갑구"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기입등기 확인
[은행확인] 제외 대상	⑥ 제2금융권 대출 총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⑦ DTI 40%를 초과하는 자 (1,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DTI기준 적용제외) ⑧ 현재 연체중인 자 ⑨ 금융채무불이행자 ⑩ 공공기록보유자 (신용회복지원 정보 및 금융지서 문란 정보 등) ⑪ 국제-지방세 등 세금 체납 포함 ⑫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중인 자 ·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제외	▶ 확인서 발급후, 취급은행 대출신청서 확인 ⑥ 제2금융권 신용대출 총액 확인 ⑦ DTI : 연소득 대비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⑧ 5영업일 이상 연체를 연체로 판단

○ (대상 확인)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확인

구분	확인 사항	확인 방법
희망리턴 패키지 참여자	○ 신용등급의 제한 없이 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폐업확인	▶ 폐업사실증명원 확인 · 폐업 전 사업체의 정책자금 지원제외명중 해당 여부 확인
	○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확인 -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기준 : 사업정리컨설팅(1주) 또는 재기교육(2일) 중, 1가지를 수료한 경우 지원 - 전환대출 신청가능기간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일 → 전환대출 신청까지 1년 6개월 이내(임금 근로자 취업 후, 근속 1개월 경과기간 포함) 신청가능 ○ 임금근로자 취업사실 확인 · "취업" 기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준용	▶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확인 -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 용자관리 시스템 "정책자금지원 대상 확인" - 재기교육 수료 : 용자관리 시스템 "정책자금지원 대상 확인" 또는 수료증 확인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성공 판단지 유의사항 ◎ 근속 중 '근로조건 변경' - 전환대출 신청기간(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후 1년 6개월)안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소상공인 전환대출 지원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 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 - 단, 근속기간은 변경된 근로조건 적용일로부터 1개월 경과 여부 판단 ◎ 취업경로 무관 - 대상자 본인의 구직활동, 고용센터 등을 통한 취업 등 취업경로에 관계없이 취업사실 확인 ◎ 취업시기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이후에 취업한 건에 대하여 인정 - 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시 자금신청 가능		

☞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취업기준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 준용

확인 사항	확인 방법
1) 근속사실 및 근속기간 동일한 사업장(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1개월 이상 근속 <small>· 다만, 참여자가 「취업 후 중도에 고용보험 기입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나 고용보험상 피보험기간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small>	▶ 확인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자격 취득일 ~ 자금 신청일까지 근속기간 확인
2) 근로시간 : 주30시간이상	▶ 확인서류 : 근로계약서
3) 고용형태 반드시 정규직에 해당하는 일자리를 것을 요하지 않음(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무관)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피보험자격자로 취득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small>·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독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함. 추후라도 전환대출 신청기간 안에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면 전환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small>	▶ 확인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5) 제외대상 · 제외사유 : 참여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서의 취업이라는 사업의 공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자리 a) 재정지원일자리 중앙부처(국가) 제공 일자리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지원 <small>· "계속 고용이 기대되는 일자리" :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중·장기 수행을 위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함</small>	▶ 확인서류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의 여부 확인 ▶ 재정지원일자리 여부 확인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 확인(100p)
b)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취업 <small>· 직계존비속 : 부모, 배우자, 자녀(본 자칭에 한하여 직계존비속범위를 가족관계서 상 확인가능한 범위로 한정)</small>	▶ "사전안내"를 통한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사업장 취업 방지 ▶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사업장 취업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c) 일용근로자	▶ 확인서류 : 근로계약서
d) 공무원	

확인 사항	확인 방법
<p><b>e) 최저임금</b>(17년 시간당 6,470원) 미만 일자리 임금* 및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월환산액) 미만 일자리 여부 판단</p> <p>* 최저임금 포함 임금 :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여수당, 생산장려수당 등</p> <p>제외임금 : 정근수당, 근무수당, 상여금,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연차휴가 수당, 임·숙직수당 등(기후수당, 급차수당, 주택수당, 평균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 「최저임금위원회 고시」</p>	<p>▶ <b>확인서류</b></p> <p>① 주당 근로시간 확인 : <b>근로계약서</b></p> <p>② 임금 확인 : <b>급여명세서</b>(수당종류별 분류가능 서류)</p> <p>▶ <b>확인방법</b></p> <p>* 월환산액(주당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1,352,230원 「최저임금위원회 고시」</p> <p>①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고, 월환산액(40시간기준)이하를 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b>최저임금 미만</b></p> <p>②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이하이고, 월환산액(40시간기준)이상을 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b>최저임금 이상</b></p>
<p><b>f) 이직(복직) 전 직장으로 6개월 이내 재취업</b> : 직전직장과 현재직장이 같을 경우, "직전직장 피보험자격 상실일 ~ 현재직장 피보험자격 취득일" 6개월 경과 여부</p> <p>* 「이직」 : 최종 이직 * 「직장」 : 이직 당시 근무했던 직종동일 기업(사)내 장소를 달리하는 사업장 경우에는 다른 직장으로 봄</p>	<p>▶ <b>확인서류</b>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p>

### □ 문의처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4~16 참조)
- 대출실행 : 전환대출 취급 금융기관(수협, 신한, 하나은행) 고객센터
  - 수협은행 고객센터 : 전국 단일전화 1588-1515
  - 신한은행 고객센터 : 전국 단일전화 1599-8000
  - 하나은행 고객센터 : 전국 단일전화 1599-1111

## 2. 성장촉진자금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5년 이상의 소상공인
  - \* 단, 제조업 제외
  -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p.18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

###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 \* (금리우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컨설팅 추진업체(컨설팅 결과보고서 등록 완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④ ('16년 이후 창업기업)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 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용자 신청서류(사업계획서)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① "개인기업에→법인기업"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확인서류 :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 신설법인 사업자등록증명, 포괄양수도 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4~16 참조)

## 3. 청년고용특별자금(舊청년드림자금)

- **지원대상** :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사업자
- ② 신청일 기준 총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자
  - \* (청년사업자) 만 39세 이하 / (청년근로자) 만 29세 이하

###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1개월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④ ('16년 이후 창업기업)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 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용자 신청서류(사업계획서)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1개월이내)

### □ 자격요건 확인방법

- 청년사업자 :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연령(만39세 이하) 확인
  - \* 실명확인증표는 대표자 연령 확인시에만 필요하며 제출 및 보관은 하지 않음
-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①청년근로자 연령(만29세 이하), ②자격취득일(최근 1년 이내 취득 여부) 확인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p.14~16 참조)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1]
  - \* 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의 경우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평균매출액 확인 불필요)
- (확인내용)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연매출액 확인방법)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등은 매출액 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우므로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 서류인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된 “매출액”을 통해 산정**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절차 중용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자동으로 발급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수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구분	내용	
산정기준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자금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자금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有)	아래 서류 중 제출 가능한 서류를 택1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b>확인기준</b> ”에 해당하는 <b>사업 월수</b> 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b>상시근로자수</b> 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6.1.19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b>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나오도록 발급)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b> 받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 및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② **업력 12개월 이상** :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③ **업력 12개월 미만** :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④ **업력 1개월 미만** : 산정일 현재 인원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 ①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 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지역가입 사실 확인
  -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확인방식 변경(요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확인사항	상시근로자수만 확인	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확인
① 평균매출액 확인 (소기업 해당 여부)	미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대상) '16.1.1 이후 창업업체</li> <li>▪ (확인내용) 연평균매출액 확인</li> <li>▪ (확인서류) 매출액증명서류 또는 사업계획서</li> <li>▪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등</li> <li>▪ 월평균매출액 × 12개월</li> <li>▪ ... 간이과세재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미확인</li> <li>▪ (매출액 기준) [별첨1] 참고</li> </ul>
② 상시근로자 수 확인 (소상공인 해당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내용) 현재 기준 상시근로자수 확인</li> <li>▪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有 :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현황</li> <li>- 상시근로자無 :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내용) 최근 12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 확인</li> <li>▪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有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li> <li>- 상시근로자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li> </ul> </li> </ul>

□ 관련근거(법령 등)

○ “소상공인”의 정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송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 소기업 확인 방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 [별표3]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 등), 80억원 이하(중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석류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별첨1 참고]
-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판단기준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변경('16.1.1 시행)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 매출액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3호“나”에 따르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 \*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매출액 × 12개월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하여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등은 매출액 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우므로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서류인 “사업계획서(직접대출은 사업현황)” 상에 기재된 “매출액”을 통해 산정**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절차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자동으로 발급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3.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지는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평균매출액등의 산정)>**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별첨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17.10.17 개정)**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업종 구분 방법

□ **업종구분 기준** <용자요령 제10조>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함(대리대출은 해당없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사업 판정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름

○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홍택스 또는 세부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산정방법**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 >

구분	내용
-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당기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창업,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b>"최근 1년간 매출액"</b> : 매출액 확인 가능한 가장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b>"최근 매출액"</b> : 개업일 이후 확인가능한 최근 분기말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 단,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현장실사(생산시설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업종전환의 경우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 ①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사업연도 신고매출액
- 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간 매출액"**,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월말(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신고매출액
-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 **"최근 매출액"**, 개업일로부터 확인 가능한 최근 월말(분기말)까지의 신고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④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 신청업체의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가능. 다만,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현장실사(생산시설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실적(사업기간)이란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
  - 분기말이란? 각분기말의 기준월은 3월, 6월, 9월, 12월로 함
- ⑤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의 경우 : 업종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1. 전환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 : 전환업종으로 업종분류하고,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2. 전환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위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을 준용

□ **업종분류 근거**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예) 종족(아이템)으로 구분 : [29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증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증개업
46209 중	일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46331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주류 소매업
47221 중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증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증개업, 게임 아바타 증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8201), 보험대리 및 증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결절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업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증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사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증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

표준산업분류	업종
76390 중	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11, 7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64992	법무, 회계 및 세무
71531 중	지주회사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의료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업(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제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업 규모(300㎡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접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지원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희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희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 불가**

-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입태·종류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